

대법원 2021도323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국책 연구소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퇴사 직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의 누설·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하였음(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국책 연구소의 기술과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이 재직한 국책 연구소는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를 개발하거나 개발된 풍력 블레이드의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블레이드의 설계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위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여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구자료 반출 등 행위

- 피고인은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소의 자료들이 담긴 파일들을 자신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반출한 파일을 토대로 피고인 소속 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풍력 블레이드 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피고인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연구소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 있는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하였음 (▶ 원심 무죄 부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연구소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음 (▶ 원심 일부 유죄 부분)

▣ 업무상배임죄

- 피고인은 연구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여 연구소의 산업기술을 유출 및 사용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연구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 원심 일부 유죄 부분)

다. 소송경과

▣ 제1심: 전부 무죄

- 제1심의 무죄 판단 이유
 -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피고인이 유출·사용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정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는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경쟁방법위반** : 피고인이 사용·누설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연구소의 보안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보안과제와 널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과제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기술은 모두 일반과제에 해당함
- 이 사건 기술은 연구소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바 없고,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되었던 사실도 인정됨

■ **업무상배임** : 이 사건 기술은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 : 제1심 파기,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일부 무죄

●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이유

■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무죄** :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음(·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지정이 없는 기술이므로)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가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첨단기술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일부 유죄** : 이 사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기술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피고인이 외국 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누설한 목적은 외국 회사가 단기간에 국책 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영업비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업무상배임 - 일부 유죄** : 이 사건 기술은 피해자 연구소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 피고인이 퇴직을 하면서 유출하거나 누설한 이 사건 기술은,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내용, 기술개발 과정, 다른 연구원들의 증언,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연구소의 영업비밀 내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 피고인이 퇴직 후에도 외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계속하여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구소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이 사건 기술을 임의로 반출하였고 반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원심판단 중 무죄 부분 관련
 - 피고인이 유출하거나 사용한 자료들과 관련된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술포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원심판단 중 유죄 부분 관련

-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과 업무상배임 부분(각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국외누설등)에서의 '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음